

의안번호	2208548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5.3.12.
추계번호	24D1166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 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	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“손자녀”를 추가하여 보상금, 부양가족수당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6호 신설)	
2	안 제12조(보상금)	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인 25세 미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도록 함(제2항)	
3	안 제15조의2 (부양가족수당)	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함(제1항)	
4	안 제22조 (교육지원 대상자 등)	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함(제1항 및 제3항)	
5	안 제29조 (취업지원 대상자 등)	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함(제1항)	
6	제42조(진료)	유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순위유족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(제5항 및 제7항)	
7	제47조(대부 대상자)	유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거나 선순위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장기저리의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됨	
8	안 제64조 (양육지원)	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제1항 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	현시점에서 지원내용(보상금, 부양가족수당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 등)별로 추가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인원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2	안 제12조(보상금)	
3	안 제15조의2 (부양가족수당)	
4	안 제22조 (교육지원 대상자 등)	
5	안 제29조 (취업지원 대상자 등)	
6	제42조(진료)	
7	제47조(대부 대상자)	
8	안 제64조 (양육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라 유·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, 보훈급여금(보상금·부양가족수당)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양육지원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보상금(제12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2항), 부양가족수당(안 제15조의2), 교육지원(안 제22조), 취업지원(안 제29조), 양육지원(안 제64조)
 - 의료지원(제42조, 선순위유족 1명), 대부지원(제47조, 선순위유족) 등
- 현행법 제6조제1항¹⁾에 따르면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,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²⁾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
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음

1) 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신청 대상자"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,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·공헌자의 경우
2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
2) 제6조의2(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3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
5.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6.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7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
8. 성명,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
9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(身上) 변동이 있는 경우

[표 1] 보상금 지급대상자 현황: 2024.12.

(단위: 명)

구 분		인 원
본 인		104,341
유족 중 선순위자	배우자	58,258
	자 녀	664
	부 모	6,130
	형 제	2
	소 계	65,054
합 계		169,395

주: 상기의 인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정된 수치이며, 교육지원·취업지원·의료지원 등의 대상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보다 많음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지원내용(보상금, 부양가족 수당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 등)별로 추가되는 국가유공자의 “손자녀”의 인원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, 그 유가족의 등록과 변동은 신청·신고주의로 운영되고 있고,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(손자녀)인원을 예측하기 곤란하여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